



시설관리위원회 운영규칙

규정번호	5-0-17
제정일자	2013.06.24
개정일자	
개정번호	Ver .0 총페이지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양미래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시설에 관한 사항을 사전검토, 조정하기 위한 시설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본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사무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산학협력처장, 기획부처장, 학생부처장, 관리영선팀장 으로 한다.
단, 위원장은 전문적인 조사 및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둘 수 있다.

제3조(임기) 본 위원회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 동안이며, 보직 변경 시에는 신규보직 자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4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시설관련 사업계획 심의
2. 시설관리 성과평가
3.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설 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 한다

제6조(의결) ①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의안 심의를 위하여 필요 시 연구시설 보수(변경)요청자 에게 관련서류 제출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모든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신설) 본 위원회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